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30312-	(전화: 731-6346)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 5. 3. 1.	시 장		
수신처 보존기간	준 영 구.			
시행일자	87. 12. 15			

보조기관		협조기관		문서통제
	도시계획국장 전 결		법무담당관	1988. 1. 05 통제관
	시설계획과장		협조통제관	
	시설계획1계장			발 송 인
기안책임자	이 상 진			1988. 1. 05 발송 서울특별시
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 조	장

제 목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변경결정

(제1안) : 내부결재

1. 도정30310-30694호('87.9.8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호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변경결정 요청된 사항이 '87년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('87.12.22)에 상정 심의 가결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코자 합니다.

첨부 : 1) 관계서류 1건.

2) 고시문 및 도면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 (도시시설계획과장)

제목 : 같음.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제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.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변경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.

바. 게재내용 : 별첨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제4안)

수신 : 구로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목 : 같음.

1. 도정30310-30694호('87.9.8)와 관련임.

2. 위 호로 요청한 귀구관내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이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

되었기 통보하니, 관련도면 정비 및 필요절차를 이행하는등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제5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 발신 : 과장

제목 : 갈음.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오니,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: 서과-09,32,40.끝.

1505-25(2-2) 일(1)율
85. 9. 9. 승인

268mm×190mm 인쇄용지 2급 60g/m²
사 40-41 1986. 2. 15.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시설(운동장)변경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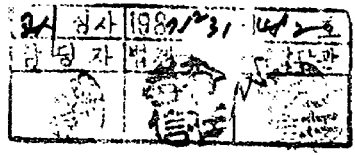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8. 1. 5
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m^2)	비 고
기정	운동장	구로구 가리봉동 345-1일대	5,144	수영장
"	"	"	0	폐 지

○ 변경결정 도면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수출의다리
변경결정지
(폐지)
운동장
공용의 청사
加 里 峰 洞
가 리 봉 제 2 동